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12월 안에 끝낼 돈 관리 체크리스트: 장려금...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12월 안에 끝낼 돈 관리 체크리스트: 장려금·종부세·자동차세·연금저축 납입

루리

12월에는 12월 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12월 16~31일 자동차세 2기분 납부, 12월 31일까지의 연금계좌 납입이 몰려 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된 날짜만 담았고, 확인이 안 된 건 「공식 확인」으로 남겼어요.

12월에는 12월 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12월 16~31일 자동차세 2기분 납부, 12월 31일까지의 연금계좌 납입이 몰려 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된 날짜만 담았고, 확인이 안 된 건 「공식 확인」으로 남겼어요.

2026-10-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위택스·고지서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 한눈에 보는 12월 일정표

날짜	대상	할 일	근거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분	기한 후 신청 (2026.6.2.~12.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12월 1일~15일	중부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 또는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12월 16일~31일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세 제2기분 (7~12월분) 납부	지방세법 제128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2월 31일	연금저축·퇴직연금 (IRP) 가입자	올해 세액공제 받으려는 납입 마무리	소득세법 제59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12월 31일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대상 지출 정리	국세청 https://www.nts.go.kr (https://www.nts.go.kr)

다음 해 1월

근로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날짜는
매년 공지)

공식 확인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isCdn=Y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2. 12월 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2026년 6월 2일~12월 1일) 안에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이 일부 줄어 지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감액 비율은 **공식 확인**하세요.
- 반기신청 대상자의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등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요.

3.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해요(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는 납세의무자도 같은 12월 1일~15일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요(같은 조 제3항).
-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세액은 고지서·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공제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4. 12월 16~31일: 자동차세 2기분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둘로 나눠 제1기분(1~6월분)은 6월 16~30일, 제2기분(7~12월분)은 12월 16~31일에 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같은 조 제4항).
- 연납 할인 등은 해마다 신청 시기와 할인율이 달라서 위택스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https://www.wetax.go.kr> (<https://www.wetax.go.kr>)).

5 5.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

항목	내용	근거
세액공제율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소득세법 제59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
연금저축 한도	연 600만 원	같은 항
퇴직연금 포함 합산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합쳐 연 900만 원	같은 항

세액공제는 납입한 과세기간에 받는 거라, 12월 31일 이후 납입분은 다음 해 분이에요. 은행·증권사 입금 마감 시간은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 6. 연말정산 대비 지출 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 25일 밝혔어요(<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한도 등)과 최신 기준은 국세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공제 구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에 있어요. 한도는 **공식 확인**하세요.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은 홈택스 간소화에 빠진 것이 있으면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요 (국세청 안내).
-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따져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그 밖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안내돼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Id=770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Id=7706>)).

7 7. 가상 예시

H씨(가상)는 12월 5일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아직 없다고 걱정했어요. 납기가 12월 16일부터라서 아직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 원에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8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했다면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
- 종부세 대상이면 12월 1~15일 납부 계획을 세웠다
- 자동차세 2기분을 12월 16~31일에 납부했다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와 올해 납입액을 확인했다
- 청약통장 납입액과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점검했다
- 1월 간소화 개통일을 확인하기로 했다

9 용어 정리

- **기한 후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이 지난 뒤 늦게 하는 신청이에요.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이에요.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쌓거나 개인이 따로 납입하는 연금 계좌예요.
- **간소화 서비스**: 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보는 서비스예요.

10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세·국세별 기준은 **공식 확인**하세요.

Q. 종부세는 모든 사람이 내나요?

A. 아니에요. 대상 요건과 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고,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확인해야 해요.

Q. 연금저축은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A. 법의 한도(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안에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11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lId=23897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lId=238977>)

- 종합부동산세법: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 지방세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lId=770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lId=7706>)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개편(2024.9.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2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